

#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하자

우리가 바다 환경을 보전하려면  
우선적으로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서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부담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 상복 / 국립수산진흥원 어장환경과장

우리는 환경보전의 세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수산업을 하고 어항을 지키려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수산업을 해야하기에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국제적인 면과 국내적인 면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 □ 국제해사기구(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해운·조선 등 국제해사문제를 다루는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각국의 정부만이 회원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해상안전, 항행의 효율성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 채택 및 시행

(2)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차별적 조치 및 불필요한 제한의 철폐

(3) 회원국간 해사협력 증진과 정보교환 및 국제 해운문제 심의

현재 IMO의 회원국은 총 155개국이며 우리나라에는 1962년 4월 10일 가입했고, 북한은 1986년 4월 16일 가입했다.

IMO의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있는데 1948년 3월 6일 설

립협약이 채택되었고, 1958년 3월 17일 발효되어, 1959년 1월 6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IMO에서 결정한 국제 협약이 41개인데, 해사안전에 관한 것이 17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것이 5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것이 15개, 기타가 4개이다.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도 IMO의 중요한 결정이다.

## □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일반적으로 런던협약이라고 불리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협약의 명칭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으로서 1972년 IMO에 의해 채택되었다.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려면 배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것이 IMO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1972년의 협약은 특별히 해로운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과 수은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화합물, 지속성플라스틱류 및 지속성합성물, 원유와 그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생물학적 및 화학적 물질 등을 제외하고는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일반적 허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런던협약의정서(London Convention Protocol)를 채택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해양투기의 일반적 금지, 폐기물 평가체제의 도입, 해상소각의 금지 등이다.

런던협약의정서 제4조 및 부속서 I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물질외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 (1) 준설물질
- (2) 하수오니
- (3) 생선 및 생선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4) 선박 및 플랫폼 기타 해상인공구조물
- (5) 불활성·무기성 지질물질
- (6) 자연성 유기물질
- (7) 칸테이너, 고철 및 별크형태의 폐기물 등이다.

간단히 말하면 런던협약의정서는 바다활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무해성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며 1996년 개정된 런던협약의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이미 해양오염방지법에 의정서의 정신이 일부 들어가 있다.

## □ 현행의 해양오염방지법

우리나라에서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은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6호로 개정된 것이며, 시행령은 1997년 11월 8일 대통령령 제15507호로 개정된 것이고, 시행규칙은 1997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령 제33호로 전문개정된 것이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는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런던 협약의정서 정신과 같이 해양투기의 일반적인 금지를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 금지)

1항.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 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폐기물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

한 원인으로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

2항.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선박안에 있는 선원과 승객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6조 제1항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제4항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배출이 가능한

해역이 있으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령 제33호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6조에 폐기물을 배출해역의 지정신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했다.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35조(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등)

1항. 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표14와 같다.

2항.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그 배출해역, 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과 그 처리기준은 각각 별표15 및 별표16과 같다.

여기서 별표14, 15, 16 등을 보면 분뇨와 축산폐수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 된 것에 한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배출은 영 해 밖에서 하도록 정했는데 실

“  
우리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틈만나면 바다에 나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반대로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양은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가  
시작된 아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축산폐수를  
바다에 버릴 경우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있음이  
주목된다.  
바다를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도록  
관제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이 작업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적으로 군산에서 200km 서쪽에 있는 「서해 병해역」, 부산에서 90km 동쪽에 있는 「동해 정해역」, 포항에서 125km 동쪽에 위치한 「동해 병해역」 등 3곳으로 지정되었다. 3가지 별표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니 1997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해양오염방지법」이나 환경관계 법률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 □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 투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틈만나면 바다에 나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반대로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양은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축산폐수를 바다에 버릴 경우에는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있음이 주목된다.

바다를 깨끗이 지키기 위해 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도록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이 작업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분뇨와 축산폐수는 육지에서

도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해양오염방지법은 말 그대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며, 법 제4조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오염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조의 5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오염 원인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에서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해역유입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로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1992년 2월에 나온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평가 연구에서는 폐기물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에의 영향이 없으며 나아가서 분뇨를 해양투기 가능도록 시행규칙 변경 건의를 제안했다. 그 뿐만 아니라 1992년 9월의 평가서에서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은 해양의 기초 생산력을 증대시켜 빈영양해역의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허용되었고, 또 적조의 피해도 입어야만 했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버린 만큼 더러워짐은 당연한 일인데 육지에서도 못버리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바다에 버리도록 하면서 해양환경보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바다의 해양환경 보전을 책임지는 전문부서가 있으니 바다가 더 이상 쓰레기장이라는 사고방식은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분뇨와 축산폐수를 시행규칙 별표14에서 삭제하면 이들의 해양투기는 금지되는 것인데, 더불어 사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해서 경과규정으로 2년 전인 1996년의 투기실적 이내에서 투기량을 허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양을 줄여 2년이내에 전면 금지도록 여유를 주는 한편 오염부담금을 무겁게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우리가 바다 환경을 보전하려면 우선적으로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서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부담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❸